「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안)

2026. 11.

여 수 해 양 경 찰 서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모사금·무슬목 해수욕장) 신규 지정

-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고, 인근 수상레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어 레저기구와 입욕객 간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개장기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대상 금지구역으로 지정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4개소(나로도·덕흥·대전·발포 해수욕장) 제외

- 해수욕장 이용객 및 레저활동 수요가 적고 인근 사업장 미운영으로 금지구역 지정 유지 실효성 낮은 해역 제외

다. 지정 현황 변경: 현행 12개소에서 개정 후 10개소 조정

- 해수욕장 9개소, 교통안전특정해역 1개소

라. 기존 지정구역 연변 부재에 따른 신규 부여

마.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바. 부칙: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호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금지기간·구역 내용 별첨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7 - 00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 1일

여 수 해 양 경 찰 서 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명칭	금 지 구 역	대 상	설정기간
1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2	모사금 해수욕장 (여수)			
3	무슬목 해수욕장 (여수)			
4	방죽포 해수욕장 (여수)			
5	장등 해수욕장 (여수)			
6	남열 해수욕장 (고흥)			
7	익금 해수욕장 (고흥)			
8	율포 해수욕장 (보성)			
9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여수)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매년 7월1일 ~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지오클럽(34-44-44N, 127-40-09E) ~ 장도 큰바위(34-44-32N, 127-39-56E)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쪽 해상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10m이내 해상 제외)	동력 수상레저 기구	

10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3.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4.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5.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9분52초 6. 북위 34도39분47초, 동경 127도59분40초 7.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8.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9.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10.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11.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2.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1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연중

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수상레저안전법」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01호는 폐지한다.

별첨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연번	명칭	금지구역도
1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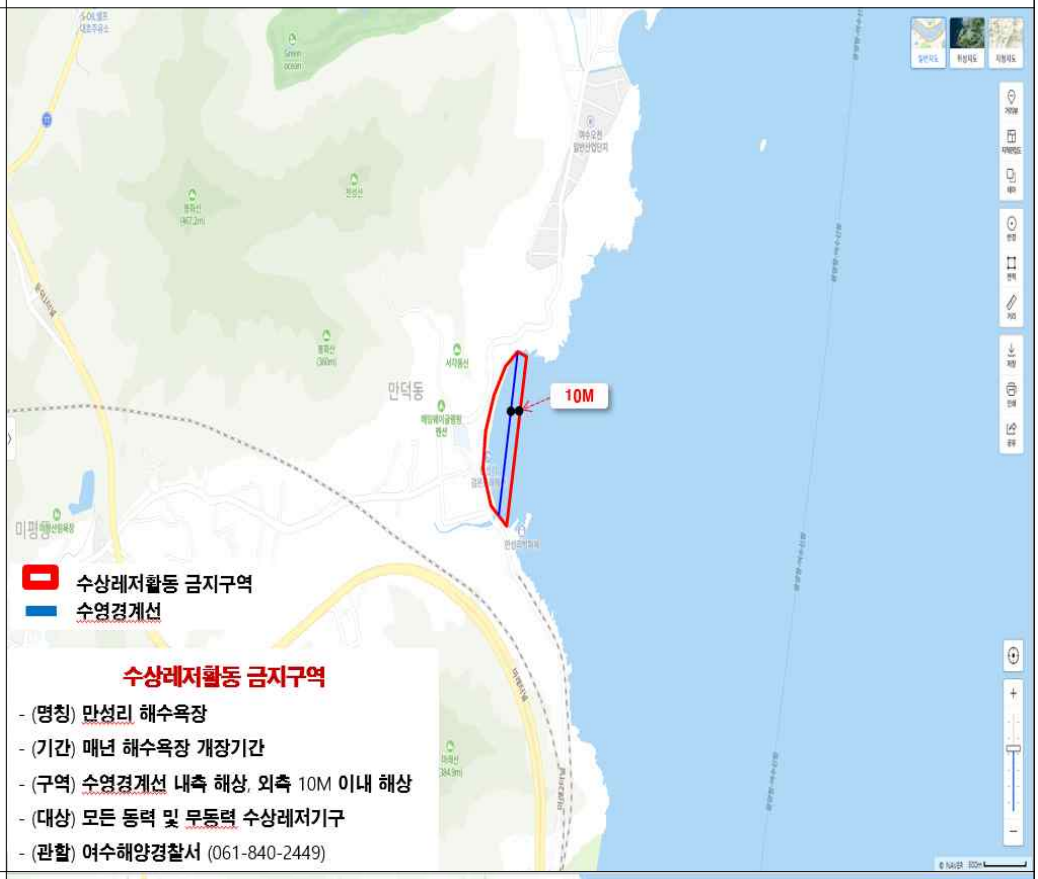
2	모사금 해수욕장 (여수)	

3	무슬목 해수욕장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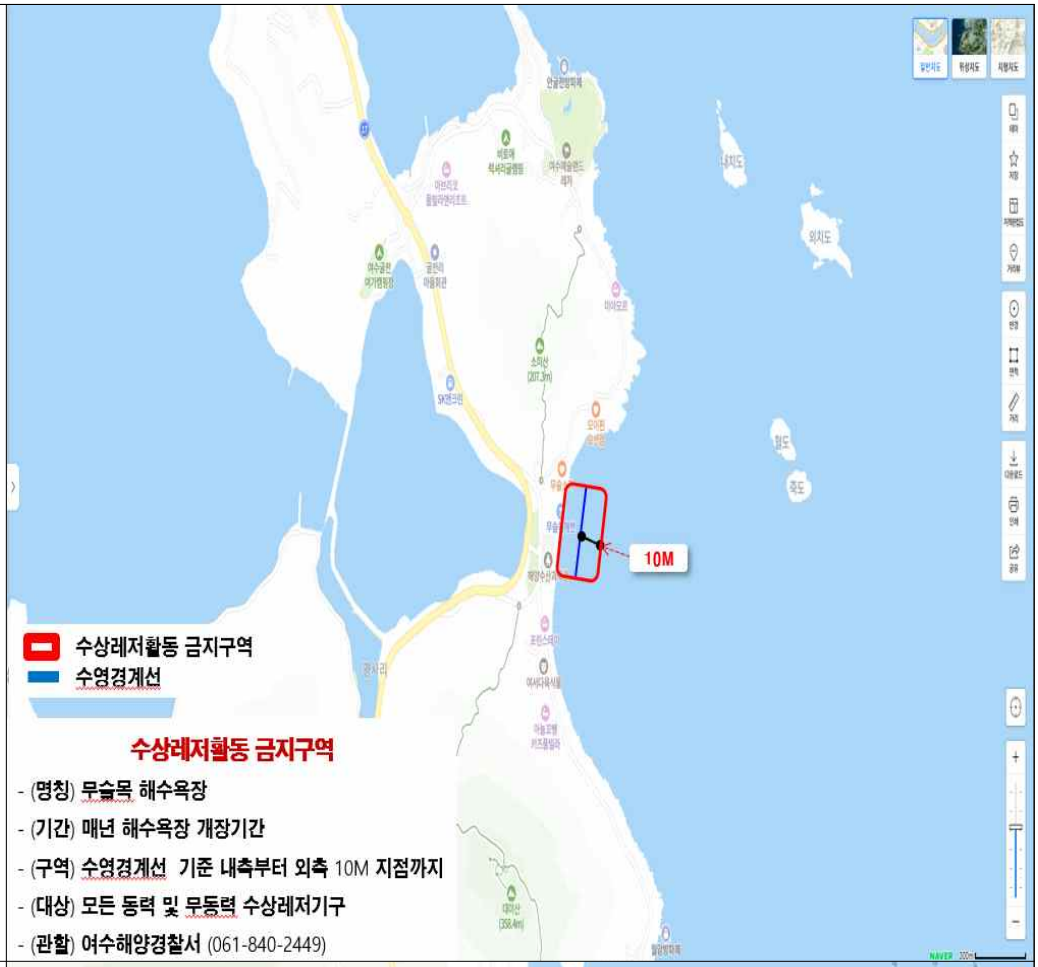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무슬목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4	방죽포 해수욕장 (여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방죽포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5	장등 해수욕장 (여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장등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외측 10M 이내 해상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6	남열 해수욕장 (고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남열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7	익금 해수욕장 (고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익금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8	율포 해수욕장 (보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율포 해수욕장 -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구역)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9	웅천 친수공원 해수욕장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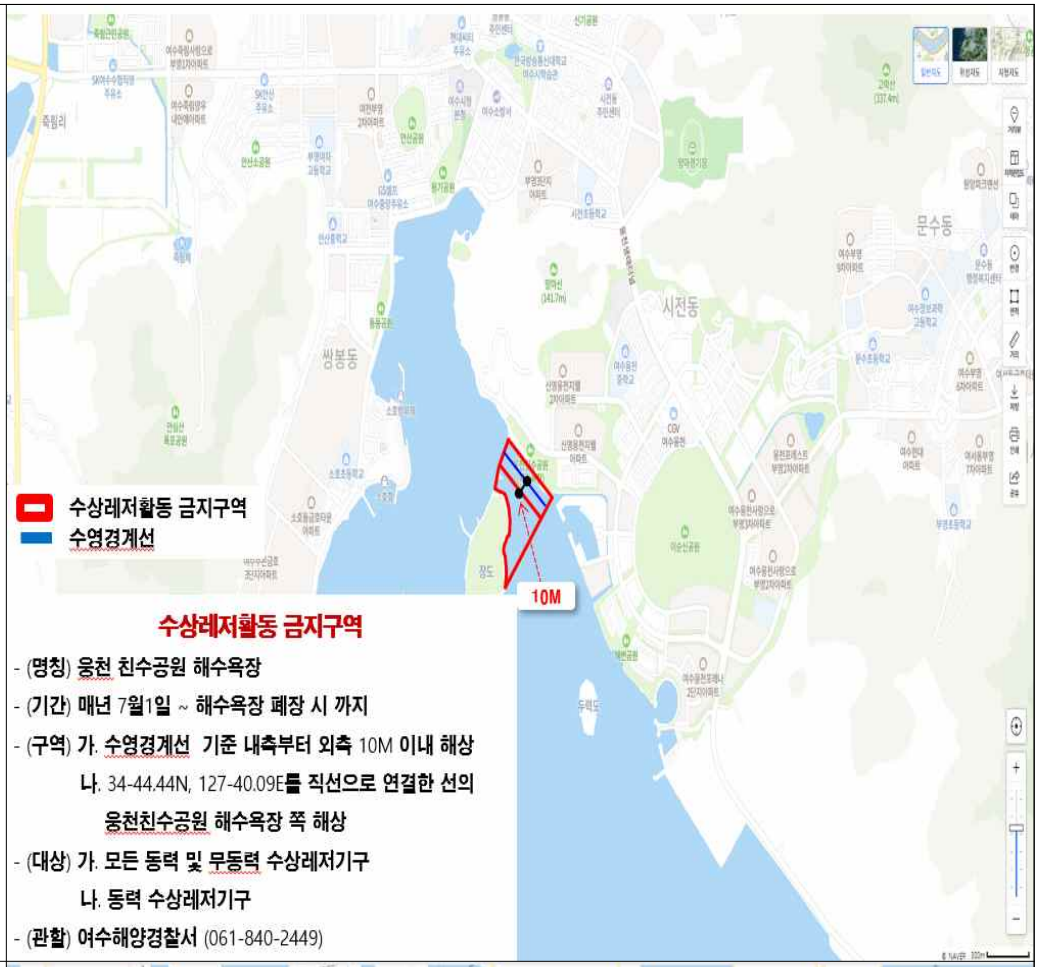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웅천 친수공원 해수욕장 - (기간) 매년 7월1일 ~ 해수욕장 폐장 시 까지 - (구역) 가.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부터 외측 10M 이내 해상 나. 34-44.44N, 127-40.09E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쪽 해상 - (대상) 가.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나. 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449)
10	교통안전 특정해역 (여수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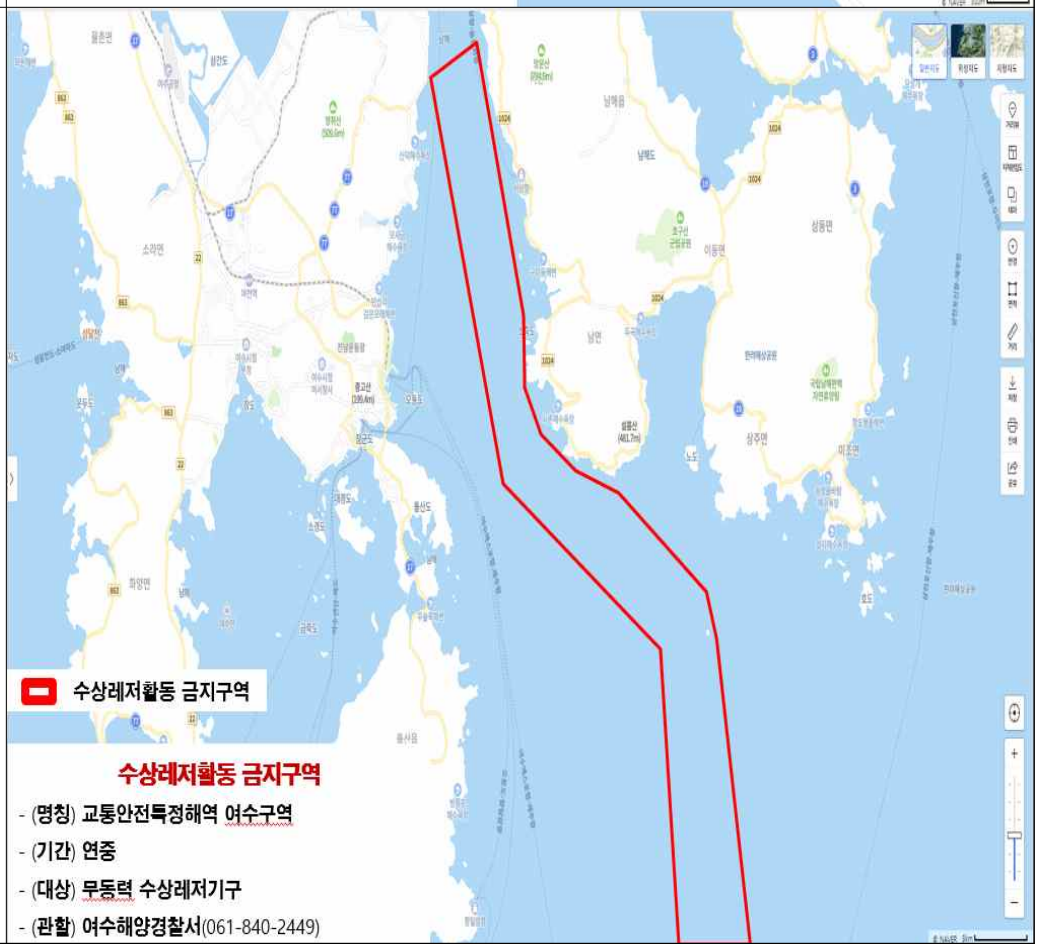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명칭)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 (기간) 연중 - (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관할) 여수해양경찰서(061-840-2449)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명칭	금 지 구 역	대 상	설정기간
만성리 해수욕장(여수)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장등 해수욕장(여수)			
방죽포 해수욕장(여수)			
나로도 해수욕장(고흥)			
덕흥 해수욕장(고흥)			
남열 해수욕장(고흥)			
대전 해수욕장(고흥)			
익금 해수욕장(고흥)			
발포 해수욕장(고흥)			
율포 해수욕장(보성)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여수)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매년 7월1일 ~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생략, 현행 고시 내용 참조)	동력 수상레저 기구	
교통안전 특정해역(여수구역)	(생략, 현행 고시 내용 참조)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연중

2.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생 략)

부 칙

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1-01호는 폐지한다.

개 정 안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명칭	금 지 구 역	대 상	설정기간
1	만성리 해수욕장(여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신 설> 모사금 해수욕장(여수)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3	<신 설> 무슬목 해수욕장(여수)			
4	방죽포 해수욕장(고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장등 해수욕장(고흥)			
6	남열 해수욕장(보성)			
7	익금 해수욕장(보성)			
8	율포 해수욕장(보성)			
9	웅천 친수공원 해수욕장(여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교통안전 특정해역(여수구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제외> ~~나로도 해수욕장(고흥), 덕흥 해수욕장(고흥) 대전 해수욕장(고흥), 발포 해수욕장(고흥)~~			

2.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부 칙

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4-01호는 폐지한다.